

# 日本の 新 電氣事業法 概說

(우리 나라 電氣事業法과의 比較檢討)

徐 正 五\*

## 1. 序 言

日本の 新 電氣事業法이 1964年 6月 25日 日本國會를 通過, 同年 7月 11日 公布되었다. 日本의 同法 制定 前의 電氣事業에 關한 規制根據法

인 『電氣에 關한 臨時措置에 關한 法律』이 制定된 以來 이미 10餘年, 그 間 1953年 頃에는 電氣關係 法令改正審議會의 新 電氣事業法의 大綱에 對한 審議 끝에 數次 新 法案이 作成되었었지만 新法 制定에 關聯되는 諸般 事情으로 因하여 1964年 6月 以前까지 新 法案이 國會에 上程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電氣에 關한 臨時措置에 關한 法律』은 그 自體의 附則으로 電氣關係法令改正審議會를 設置하고 電氣에 關한 恒久的 基本法의 制定을 豫定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同法은 어디까지나 臨時的인 法이었으나 이 臨時措置狀態가 이와 같이 長期에 亙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因하여 日本의 電氣關係 法制는 形式的으로도 至極히 複雜하였고 또 變則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內容의으로도 最近 電氣事業 內外의 實態에 副應할 수 없는 點이 不少하여 新法 制定의 必要性이 더욱 要望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1962年 4月에 電氣事業審議會가 設置되고 約 1年半에 亙하여 電氣事業에 關한 重要 問題를 慎重히 檢討한 結果 1963年 10月 그 結論을 日本政府에 提出하게 되었다.

이를 根據로 作成된 것이 곧 日本政府의 電氣事業法案인 것이다. 日本國會의 審議는 3個月 餘에 걸

本稿는 1964年 6月 25日 日本의 國會에서 議決되고 1965年 6月 15日에 公布된 同法 關係 諸 政省令에 依據하여 1965年 7月 1日부터 實施된 日本 新 電氣事業法의 重要 改正 內容에 關하여 日本電氣協會誌에 掲載된 것을 主 內容으로 한 新 日本電氣事業法의 紹介입니다. 우리 나라 電氣事業法과의 差異點을 參考로서 簡略하게 指摘 附記하였습니다.

렸고 企業體制의 問題, 廣域의 運營의 問題, 電氣料金の 問題(電力料금과 電燈料금과의 格差, 料金の 地域格差, 電燈料金の 全國一元化), 未點燈部落 解消의 問題, 補償問題(線路補償, 不當한 補償要求 抑制對策等) 등이 特히 論議되었으나 第4章 「電氣事業審議會」와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全文 14條)가 追加되고 이에 附隨되는 條文의 整理 以外에는 原案대로 可決 通過되었다(한 便 日本 參議院에서는 せり비스 向上, 廣域의 運營의 促進, 電力料金の 地域差 縮少等 7個 項目에 關하여 附帶決議가 있었음). 또한 新法 施行에 對하여는 附則 第1項 本文으로서 「公布日로부터 1年 以內에 政令으로 定하는 日字」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1965年 6月 15日 公布된 關係 諸 政省令에 依據 1965年 7月 1日字로 施行케 된 것이다. 이것은 新法의 施行을 爲하여 充分한 準備期間이 必要하였기 때문이다.

## 2. 日本 新 電氣事業法의 改正 要點

日本の 新 電氣事業法은 基本的으로는 舊 法令과 거의 같은 立場을 取하였다. 即 事業規制와 保安規制를 二大 支柱로 하고 이에 對하여 電氣事業이 地域獨占의 公益事業으로서 또는 國民生活과 産業經濟에 不可缺한, 代替성이 거의 없는(基礎에너지를 供給하는) 基幹産業으로서의 國民經濟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各種의 保護育成과 料金, せり비스의 規制等 所謂 公益事業 規制를 中心으로 하는 政府의

\*韓國電力株式會社·企劃部·管理課長

公共統制를 規定하였으며 保安面에 있어서는 電氣事業者의 施設에 限하지 않고 公共의 保安確保面에서 널리 電氣施設의 保安을 規制하고 있다. 日本의 舊法 制定時와 現在와는 日本 電氣事業의 內外 事情의 大端한 變化를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情勢의 變化를 充分히 勘案함과 同時에 今後의 電氣事業 發展方向에 適應할 수 있도록 特히 다음 諸點을 重要視하고 있다.

### (1) 廣域의 運營의 促進

電氣事業의 企業體制에 關하여는 新法 制定의 前提인 電氣事業審議會에 있어서도 가장 論議된 點이지만 現行 體制의 問題點, 公社化나 合併 等の 得失 等을 널리 綜合的으로 勘案한 結果 現行의 地域別 9個 分割體制의 長點을 살려서 廣域의 運營의 劃期的 改善, 電源開發株式會社의 積極的 活用 等に 依하여 이를 補充하여 가는 것이 適當하다고 結論 지었다.

이러한 結論에 依據한 新法에 있어서도 前述한 바와 같이 私企業 分割體制를 前提로 하고 이에 依하여 發生되는 地域的 需給의 不均衡, 各 電氣事業者 間의 經理의 格差 等の 諸 問題에 있어서는 廣域의 運營의 促進에 依하여 解決하려고 諸 規程의 整備를 計劃하고 있는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第2章 第2節 第2款 廣域의 運營에 있어 電氣事業者의 相互協助義務를 宣言한 點(第28條) 廣域의 運營上 重要한 役割을 하여야 할 電氣事業者에 對하여 電氣工作物의 施設計劃과 電氣의 供給計劃의 提出義務를 賦課하고 이에 對한 通商産業大臣의 變更·勸告權을 規定한 點(第29條)을 中心으로 하여 電氣事業者에 對한 電氣의 需給, 電氣工作物의 貸借, 共用 等の 命令을 規定한 點(第32條. 日本 舊法은 融通命令이 있었을 뿐임), 事業의 許可 및 許可事項 變更에 있어서는 電氣事業의 總括的 立場에서의 合理性 有無에 立脚하여 判斷하도록 한 點(第5條, 第6號, 第8條 第3項), 融通料金の 認可에 있어 廣域의 價値의 觀點에서의 配慮를 하도록 한 點(第22條 第2項) 等을 들 수 있다.

### (2) 電氣 使用者에 對한 서비스의 強化

戰後 日本 經濟의 回復期에 있어서는 急增하는 電力需要에 對處하여 供給力의 量的 確保를 企圖하는 일이 電氣事業의 第一義의 使命이었던 까닭에 電氣事業은 全力을 巨大한 電源開發에 集中하고 있었다. 그러나 最近 多幸히 日本經濟는 安定成長에로의 移

行이 豫想되고 同時에 電氣의 絕對量 充足에 맞기던 時代는 끝났으므로 이제부터는 電氣料金の 長期的 安定을 中心으로 서비스 水準의 向上을 圖謀함이 電氣事業의 最大 重要 課題로 되었다. 特히 近來 産業의 高度化, 自動制御化의 推進 및 國民生活의 向上에 따른 家庭電化의 普及 等に 隨伴하여 電壓, 周波數 等 供給電力의 質的 向上은 勿論 窓口事務의 圓滑한 處理 等 서비스 改善에 對한 要請이 漸次 높아가는 까닭에 이에 副應하여 諸 規定을 整備하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電壓 周波數 維持에 關한 努力義務, 改善命令(第26條·第30條), 日常 末端業務에 關한 改善命令(第31條) 等 外에 그 前提로서 隘路事項陳情 制度가 法律上 明文化되어 있다(第111條. 日本의 舊 法律은 公益事業令에 依한 聽聞 및 異議申請規則 第6條에 依하여 陳情 提出의 길이 間接的으로 열려 있었을 뿐임).

### (3) 規制의 簡素化·合理化

舊 日本 電氣事業法이 形式的으로나 實質的으로나 現今 實態에 適應되지 않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으나 (1) 또는 (2)에서 말한 바와 같은 諸般 新規定을 整備한것 以外에도 다시 新法은 企業經營의 能率化와 行政의 合理化, 簡素化의 見地에서 여러가지 配慮를 하고 있다. 即 電氣事業의 經營的 基礎的 強化, 技術水準의 向上 等に 따라 主로 財務規制, 保安施設規制에 있어서 許可·認可制度 等の 細部の 規制가 大端히 簡素化 또는 合理化되고 있는 點이 바로 그것이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財務會計面에 있어서 授權資本의 變更, 株當 額面金額의 變更, 利益金의 處分, 社債의 募集 및 長期 借入金에 關한 諸般 既存 規制를 廢止하고 그 代身 減價償却 및 積立金, 充當金의 積立에 關한 命令(第36條)과 監査(第15條)의 規定을 設定 規制하고 樣式도 一新하고 있다. 또한 施設保安面에 있어서는 舊法上 認可를 要하는 工事計劃의 一部를 事前届出制로 改正하고(第42條·第17條) 規制 簡素化에 努力하는 反面 舊法에서 電氣事業者에게는 選任義務가 없는 電氣主任技術者를 電氣事業者에 對하여도 選任토록 하는(第56條) 等 主任技術者制度의 充實을 中心으로 하여 保安規程의 作成과 届出, 通商産業大臣의 保安規程變更命令權(第52條 第74條) 等 自主的 保安制度 確立을 爲한 規定이 整備되었으므로 또한 電氣工作物檢査官制度의 導入(第104條) 等に 依한 電氣工作物檢査의 充實을 期하는 等 規制合理化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保安責任을 需用家에게 轉換함과 同時에 電氣事業者 等に 그 調査義務를 課하고(第67條等) 다시 그 調査義務의 受託機關으로서 指定調査機關制度(第3章 第2節)를 導入한 點도 規制合理化의 一環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の 諸點을 中心으로 하여 新法은 本則 6章 123條와 附則 31項으로 成立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그 中 第4章 電氣事業審議會 및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第86條 乃至 第99條)와 附則 第26項의 一部는 國會 審議의 過程에서 附加 修正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項을 바꾸어 章別로 新法의 內容을 概說하고 우리 나라 電氣事業法과의 差異點을 拔萃 要約해 보기로 한다.

### 3. 日本 新 電氣事業法의 概要

#### 〔第1章 總 則〕

本章은 本法의 目的 및 本法에서 使用되는 基本用語에 對한 定義로서 電氣事業(者)을 一般電氣事業(者)과 都賣電氣事業(者)으로 區分한 點(이 點은 日本의 公益事業令施行規則 第2條에서도 區分 規定하고 있었으나 舊 日本電氣事業法에는 없었던 것을 新法에서 受容한 것이다). 電氣工作物을 電氣事業用에 供與한 것에 限定하지 아니한 點이 日本의 舊法體制와 相違한 點이다. 또한 第2條 第8項에 있어서 一般電氣事業者가 다른 一般電氣事業者에게 一般電氣事業用에 提供하기 爲한 電氣를 供給하는 事業을 營爲할 때에는 그 事業은 一般電氣事業으로 看做한다고 規定되어 있지만 이는 單只 立法技術的 規定인 것이다. 即 一般電氣事業者가 다른 一般電氣事業者에게 電氣를 供給하는 것은 普通 電力의 融通이라고 생각되나 本法의 定義上 都賣電氣事業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一般電氣事業者가 都賣電氣事業의 許可를 받을 必要性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一般電氣事業者와 都賣電氣事業者에 對하여 規制形式이 다른 경우(例를 들면 兼業規制, 特定供給等)에 本法의 適用上 一般電氣事業者로서의 規制를 받는가, 都賣電氣事業者로서의 規制를 받는가의 法解釋上의 混亂을 防止하자는 趣旨이다. 이 點에 對하여 우리 나라 電氣事業法은 規定한 實益이 없으므로 規定한 바가 없다. 또한 一般電氣工作物과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對하여는 第66條에 定義되어 있다.

同法 施行令에서 보면 電氣工作物의 定義에서 除外되는 工作物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첫째 鐵道車輛, 船舶, 自動車 等に 設置되는 工作物.

둘째 航空機에 設置되는 工作物.

셋째 電壓 30V 未滿의 電氣의 設備(30V 以上の 電氣設備과 接接되지 않은 것) 등이다.

本章은 우리 나라 電氣事業法의 第1章에 該當되는 部分으로서 우리 나라의 現 發配電事業 一元化體制에서는 發配電事業(日本의 都賣電氣事業)과 配電事業(一般電氣事業)을 區分할 意義는 없으므로 電氣事業者의 概念을 發配電 및 電氣軌道 事業者(第3條)로 하고 있으며 電氣工作物의 概念은 우리 나라 法이 日本 舊法의 條文과 그 內容이 同一하다. 따라서 우리 電氣事業法의 解釋도 過去 日本에서의 解釋과 같이 電氣事業用에 限定한 것으로 解釋된다. 日本의 新法이 電氣工作物의 定義를 一般電氣事業用에 限定하지 아니한 것은 電氣工作物에 關한 規制趣旨가 保安保障에 있는 까닭으로 우리 法에서도 이와 같이 補充 解釋함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規制의 必要性이 없는 事項을 施行令에서 明文으로 規定하여 電氣工作物의 定義를 明白히 한 것은 當然한 結果이며 電氣事業法이 公安을 爲한 規制法이라는 點에서 더욱 必要한 措置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앞으로의 法制에 參考할 價値있는 點이다.

#### 〔第2章 電氣事業〕

本章은 電氣事業者에 關한 事業, 業務, 會計 및 財務와 電氣工作物에 있어서의 規制, 土地 等に 關한 公益事業特權을 主 內容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本法의 中心이 되어 있다.

(1) 第1節 事業許可에 있어서는 電氣事業의 公益事業인 性格을 勘察하여 電氣事業의 創設로부터 廢止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 있어서 必要한 監督規制가 規定되어 있다. 主要 內容은 事業의 許可 및 그 變更許可, 電氣工作物의 設置와 事業開始義務, 事業의 讓渡, 讓受, 合併의 認可, 兼業認可, 設備의 讓渡 等の 許可, 事業의 休止와 廢止의 許可, 法人의 解散 認可, 事業許可 等の 取消, 未供給區域의 減少處分, 一般電氣事業者 以外者의 特定 供給許可 等이다. 諸 規定과 體系는 過去 日本의 公益事業令과 比較의 類似한 것이나 重要 差異點을 들면 아래와 같으며 이 差異點이 日本 電氣事業規制에 있어

지난 날의 經驗에서 問題되던 것을 立法에 當하여 解決한 發展의 內容이기도 한 것이다.

첫째로 事業許可의 基準이다. 舊 日本의 公益事業은 事業許可의 基準은 ①一般需用에의 適合 與否 ②公共利益의 增進 與否 ③事業을 適切하고 確實하게 遂行할 수 있는 財政的 基礎의 有無 等の 3點에 不過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上記 基準에 適合하더라도 同一 地域에 對하여는 이를 供給區域으로 하는 2個 以上の 一般電氣事業의 許可를 하지 못하도록 規定하였다(法的 獨占條項의 設定).

이에 對하여 新法에 있어서는 法的 獨占條項은 憲法上의 基本의 人權인 職業選擇의 自由를 抑制하게 될 憂慮가 있고 또한 供給區域의 境界 附近이나 未點燈部落 等に 있어서는 便宜上 例外的으로 彈力性 있는 措置를 取할 수 있는 餘地를 두는 것이 適當한 點도 있으므로 이를 削除하고 그 代身 一般電氣事業의 二重投資를 防止하기 爲한 基準을 追加하고 있다. 實際問題에 있어서는 未點燈地域을 除外하면 新 配電設備 設置의 경우에 있어서 過剩投資 防止基準의 實效는 法的 獨占條項과 同一한 結果를 가져올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實質的으로 가장 注目되는 것은 法的 獨占條項을 削除한 點보다도 廣域의 運營의 觀點으로부터의 基準이 加하여진 點이다. 即 第5條 第6號에 있어서 「其他 該電氣事業의 開始가 電氣事業의 綜合的 또는 合理的인 發達 其他 公共利益 增進을 爲하여 必要하고 適切할 것」을 規定하여 個個 電氣事業의 合理性을 超越한 電氣事業 全體의 綜合的 立場에서의 合理性 有無를 基準으로 하고 있는 點이 바로 그 點이다.

第5條의 事業許可 基準은 第8條 3項에 있어서의 既許可分의 內容變更 許可基準으로도 準用되는 바 日本 全國이 結果적으로 어느 一般電氣事業者의 供給區域으로 되어 있는 現在 第5條의 基準은 變更許可基準으로서 重要性을 갖는 것이지만 電氣의 供給計劃 및 電氣工作物의 施設計劃에 關한 諸 規定等과 더불어 合理的 電力融通, 電氣工作物의 設置等 廣域의 運營의 確保를 爲한 重要한 機能을 達成하게 될 것이다. 其他 事業許可의 基準에는 設備의 大容量化, 原子力發電 等の 採擇에 隨伴하여 技術의 能力의 有無, 計劃의 確實性 等に 關한 基準이 附加된 것도 注目되는 點이다.

우리 電氣事業法은 事業의 許可基準(日本은 前述

한 바와 같이 羈束裁量임을 明定)에 對하여 明文으로 規定한 바가 없다. 이는 우리 나라에 있어 電氣事業이 實質的으로는 政府投資事業인 까닭에 그 實益이 없다고 하겠지만 먼 將來에 對하여 보면 電氣事業은 企業性質 上으로 適切한 規制에 依한 純民營事業(民間資本 만의 事業)으로도 可能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先進 諸國의 一般的인 趨勢라는 點에서 施設의 過剩投資를 規制함으로써 政府統制는 足한 것이므로 許可基準 等を 日本과 같이 公益의 見地와 技術的 見地에 局限토록 設定하는 것이 必要하며 앞으로의 電氣事業法 改正에 當하여 充分히 論議될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우리의 實情에서도 各 島嶼(濟州島 包含)나 特殊條件을 가진 地域에 있어서는 오히려 全國 一元的 電氣料金體系에 依하여 電氣를 供給하는 것은 어느 點에서는 矛盾되는 點도 없지 않으며 이것을 是正하는 길은 電氣事業을 政府의 政策이나 政治의 影響에서 完全히 遊離되도록 促進하는 길 밖에는 없으며 이런 諸點을 爲하여 許可基準을 公益 및 技術上의 羈束裁量에 依하도록 事業法에 明定함이 必要하다. 事實 法理論上 許可는 一般的으로 모두 羈束裁量 行爲인 것이나 法技術上 그 裁量基準을 明定하는 것은 實際上 必要한 것이며 重要한 것이다. 日本 電氣事業法의 整備趣旨도 이러한 點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業務規制를 一般電氣事業者에 限定한 點이다(第12條). 大概의 경우 一般電氣事業者에 있어 兼業規制를 設定하고 있는 것은 一般電氣事業者는 公益事業인 一般電氣事業 遂行에 專念하여야 할 것이고 함부로 他事業을 行하여 그 事業의 盛衰에 따라 本來의 一般電氣事業에 影響을 주거나 經營의 健全性을 缺하게 되는 것은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確保할 수 없다는 趣旨에서 出發한 것이나 이 趣旨로부터 말하면 都實電氣事業者의 立場은 一般電氣事業者를 通하여 一般需用家를 相對한다는 間接的인 것으로서 반드시 一般電氣事業者와 같이 兼業을 規制할 必要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一般電氣事業者 만이 兼業許可를 要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日本의 電氣事業은 現在 9個 發配電會社와 電源開發株式會社 등으로 運營되고 있는 바 兼業規制는 一般電氣事業者인 9個 發配電會社에 限定한 것인데 이에 對하여 우리 電氣事業法은 電氣事業者를 區分하지 않고 一元的으로 다루었으므로 이것이 우리

法制의 다른 점이다. 實際로 發配電 一元體制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實益이 없다. 다만 앞으로 發電 單을 專擔하는 都賣電氣事業者가 發生할 때에는 이 점은 法制에서 考慮할 充分한 價値가 있는 事項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는 一般電氣事業者 以外的 者 即 都賣電氣事業者, 自家發電 等の 特定供給을 許可制로 한 點이다.(第17條).

舊 日本法은 都賣電氣事業者의 特定供給에 있어서는 一般電氣事業者의 경우와 같이 供給關係로서 事業許可의 內容에 包含되어 許可對象으로 되어 있었고 自家發電에 있어서는 通商産業省令으로 通商産業大臣의 別途 認可를 得하도록 하였으나 이 省令은 新法 制定時까지도 制定되지 않은채 있었다. 新法에서 이들 都賣電氣事業者와 自家發電 等の 特定供給을 許可받도록 規定한 趣旨는 一般電氣事業者에게 그 供給區域 內의 需要에 對하여 差別없이 供給義務를 賦課하고 있는 點(第18條)을 勘案하여 都賣電氣事業者, 自家發電 等이 一般電氣事業者의 供給區域에서 그 剩餘電力을 特定供給하는 것을 自由放任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電氣的 設備의 重複을 發生케 되어 一般電氣事業者의 供給範圍가 不安定하게 되고 電氣의 供給秩序가 紊亂케 되는 結果 一般電氣事業者의 料金 其他의 供給條件에 惡影響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一般電氣事業者로부터 電氣의 供給을 받고 있는 一般需用家의 利益을 害치는 結果가 되므로 이를 防止하려고 하는 趣旨인 것이다.

또한 여기에 特定供給이라 함은 一般需要에 應하는 供給(一般供給) 및 電氣事業者에 對한 電氣事業用에 使用키 爲한 供給 以外的 電氣供給을 말하는 것이며 具體的으로는 自己 社宅에 對한 供給, 姉妹會社에 對한 供給 等 供給者와 特殊 密接한 關係에 있는 需要에 對한 供給 單을 말한다. 一般電氣事業者가 行하는 供給區域 以外的 需要에 對한 特定供給에 關하여는 第24條에 規定되어 있으나 供給區域內에 있어서의 需要는 原則的으로 當該地域을 供給區域으로 하는 一般電氣事業者의 供給에 依하여 充足되어야 한다는 供給秩序 維持의 要請이 一般電氣事業者 相互의 立場에 있어서 一層 더 強하게 考慮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一般電氣事業者의 特定供給은 兼業의 特別한 경우라고도 생각되는 것으로서 그 許可에 있어서는 上記와 같은 諸點을 慎重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하는 都賣電氣事業者, 自家發電 等

에 比하여 許可基準도 嚴格히 되어 있다.

다음으로 電氣事業審議會의 見解에 있어서는 電氣事業者의 法令違反 等の 경우에 事業許可 取消權을 發動하는 것은 實際上 甚히 困難하므로 이를 補充할만한 措置로서 例를 들면 役員解任命令, 事業讓渡命令 等の 規定을 代身으로 두는 것이 適當하다는 趣旨가 나타나 있다. 이 中 役員解任命令을 設定하는 點에 對하여는 企業運營의 自主性을 尊重하는 意味에서 電氣事業審議會의 意見도 積極的인 것은 아니었으며 本法案 作成時 事業讓渡命令을 立法하는 것에 對하여는 論議된 바가 있었으나 法令을 違反한 電氣事業者에 對하여 讓渡命令을 規定하는 것은 別問題로 하더라도 何等 命令違反 行爲를 하지 아니한 讓受者 側에 對하여서도 讓受命令을 規定하는 것은 困難하며 더욱이 讓渡命令 單을 規定하고 讓受命令을 規定하지 않는 것은 實際上 아무런 效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까닭에 事業의 讓渡命令規定을 廢는 것은 拋棄하고 말았다.

우리 電氣事業法은 一般電氣事業과 都賣電氣事業의 區別이 없으므로 그 許可條件이 區分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事實上 發配電 一元化體制인 現實에서 實益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發電單을 專擔할 發電會社의 存在가 必要할 경우에는 本制度를 導入함도 좋다고 생각되는 點은 前述한 바와 같다. 監督에 있어서 事業讓渡는 許可制로 되어 있는 點은 日本의 경우와 같다. 우리 나라의 電氣事業을 實質的으로 專擔한 韓電의 設立法인 韓電法은 特別 監督을 強化한 點이 있으나 이제 電源開發이 成功 段階에 있고 企業의 自律性을 爲하여 直接的인 統制(任員의 任命 및 解任) 等은 止揚하고 株式會社制度에 依한 自律統制에 依한 企業性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본다.

日本의 電氣事業法이 公益目的에 不可避한 最少限의 事業規制에 局限하고 있는 點에 比하여 韓電法과 같은 特別法이 人事, 豫算 等の 內部規制 等 強力한 監督을 加하고 있는 點은 事業의 自律性을 害칠 뿐만 아니라 官營企業의 諸 弊端이 電氣事業의 企業發達性을 阻害하게 될 憂慮가 있다고 思料된다.

(2) 第2節 業務는 第1款 供給, 第2款 廣域의 運營, 第3款 監督으로 成立되었다.

第1款의 重要 內容은 供給義務, 供給規程, 都賣供給, 融通供給, 特定供給, 對替供給 等に 關한 許可, 電壓 周波數의 維持努力義務 및 測定記錄義

務, 電氣의 使用制限 等이다. 이들 中 融通料金에 있어서 廣域의 運營의 促進이라는 觀點에서 彈力基準을 設定한 點, 消費者 서비스 向上의 見地에서 電壓과 周波數의 維持에 關한 規定을 設定한 點 및 一般電氣事業者의 特定供給에 關한 點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本款에서 特히 注目되는 點은 供給規程料金 및 都賣供給料金에 있어서 原價主義原則을 明確히 한 點, 對替供給에 關한 規定이 設定된 點 등을 들 수 있다. 舊法에서는 料金の 算定基準은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國民生活에 重大한 影響을 주는 電氣料金の 算定을 1個 行政機關의 命令에 全面的으로 委任하는 것은 不適當하며 料金算定の 根本原則은 法律으로써 明白하게 함이 適切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므로 第19條 第2項 1號에 原價主義原則을 規定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電氣料金과 같은 公共料金은 公共料金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서 定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國民生活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決定에 慎重을 期하기 爲한 것으로서 結果적으로 같은 理念이다. 特히 日本의 電氣事業法의 경우는 第19條에서 電氣供給條件 認可에 있어 料金과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政府의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即『通商産業大臣은 電氣料금이 能率의 인 運營下에서 適當한 原價에 適正한 利潤을 加한 것이라고 認定되고 또한 供給 種類에 依하여 定率 또는 定額制에 依하여 明確하게 定하여졌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認可를 하여야 한다』라는 義務條項의 明定이다. 이는 公益事業의 料금이 政策에 拘碍될 때에 에너지企業에 미치는 影響의 重大性을 勘案하여 適正한 料金制度를 保障한 것이다. 이러한 點이 電氣事業法에 規定되었다는 事實은 重大한 意義가 있으며 注目할만한 點이다. 即 電氣事業法은 이미 過去와 같이 電氣事業者를 中心으로 하는 規制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政府까지를 規制對象으로 하여 公益企業의 健全性을 保障하는 것을 法理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對替供給에 對하여 보면 本法에서 말하는 對替供給이라 함은 所謂 對替供給(同時對替)外에 託送을 包含하는 概念이지만 이것을 普通의 融通供給과 同一하게 取扱하는 것은 不適當하므로 第25條를 特別히 設定한 것이다. 第2款 廣域의 運營은 廣域의 運營 促進을 爲한 電氣事業者 間의 協調義務에 關한 宣言規定, 電氣工作物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의 提出義務와 이들 計劃에 對한 通商産業大臣의 變更勸告權 等の 規定으로 成立되었으며 日本 舊法制에 없었던 술의 새로운 것들이다. 電氣事業의 廣域의 運營은 從來 9個 電力會社와 電源開發株式會社와의 사이에서 自律적으로 行하여졌으며 主로 既存 施設의 運用面(電力融通) 등으로 相當한 成果를 올리고 있었거마는 電源開發 및 그에 隨伴하는 設備의 運用面 等に 있어서는 不充分했던 點을 勘案하여 第28條에서 相互協助의 重點이 『電源開發의 實施, 電氣의 供給, 電氣工作物의 運用等』에 있음이 明示되어 있다(具體적으로는 輪番開發, 共同開發, 委託開發, 融通, 新設 大容量 火力發電所의 重點의 運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第28條에는 廣域의 運營이 確保되는가의 與否는 最終적으로 各 電氣事業者의 意思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第29條에는 다시 政府의 調整機能이 規定되어 있다. 即 9個 電力會社와 電源開發株式會社, 相當規模의 都賣電氣事業者 等 通商産業大臣이 廣域의 運營에 依한 電氣事業의 綜合的 및 合理的인 發達을 圖謀하기 爲하여 事業의 運營을 調整함이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指定하는 電氣事業者에 對하여는 電氣工作物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의 提出義務를 課하고 이 計劃에 對하여 通商産業大臣은 廣域의 運營의 觀點에서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變更을 勸告할 수 있는 趣旨을 規定한 것이 것이며 다시 必要한 경우에는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電氣供給, 電氣工作物의 貸借, 共用 등을 行하도록 命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本款 및 廣域 經濟性의 觀點에서 深甚한 配慮를 加味한 諸規定을 適切히 運用함으로써 企業 格差의 縮少等 日本의 電氣事業이 直面하고 있는 重要課題의 解決을 圖謀함이 期待되고 있다.

第3款 監督은 서비스의 改善 및 廣域의 運營의 促進 등을 爲한 監督命令 即 電壓 및 周波數의 維持命令, 日常業務節次方法의 改善命令, 供給命令 等の 諸規定으로 成立되어 있다. 이에 對하여는 關係部分에서 說明하였으므로 省略하기로 한다. 上記 諸點은 우리 나라의 경우와 大體로 同一하다. 事實上으로 韓電이 電氣事業을 專擅하고 있는 實情에서 韓電法에는 電氣事業者로서보다도 國家投資機關으로서의 強力한 監督規定이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3) 第3節 會計 및 財務에 있어서는 會計의 整理, 減價償却積立金 等の 積立에 關한 命令, 資產價額

의變更命令, 渴水準補充當金, 社債發行限度의 特例, 一般擔保의 規定 등으로 되어 있다.

會計財務에 關한 規定은 公益事業으로서의 電氣事業에 對한 監督을 適正하게 行하기 爲한 統一의인 會計制度, 電氣事業의 健全한 發達을 圖謀하기 爲한 內部留保充實命令, 資産價額變更命令과 같은 監督規定 以外에 一般電氣事業이 典型的인 設備事業임을 勘案하여 社債發行限度의 特例, 社債權者에 對한 一般擔保라는 特權도 規定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舊法에 比하여 이 分野에 있어서는 細部的 規制가 大端히 簡素化되어, 減價償却積立金, 充當金の 積立에 關한 命令을 公事業法에 따라 新設하는 第36條와 더불어 監査의 充實을 期하고 있는 것(第105條)이 가장 注目되는 點이지만 日本 電氣事業의 經營의 基礎가 比較的 堅固하게 되어 가는 現在 이를 規定의 適正한 運用에 依하여 財務會計面으로부터의 公益事業 規制는 充分히 可能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其他 規定에 있어서는 舊法과 大體로 같다(社債發行限度의 特例는 日本의 公益事業令 第51條로서 電氣事業再編成令의 規定에 依한 新 電氣事業會社의 成立後 3年 以內에 限하여 認定되고 있었으나 現今은 當該 規定의 効力이 없어졌음). 또한 電氣事業審議會議의 見解는 電氣事業의 適切하고 確實한 遂行과 健全한 經營을 確保하기 爲하여 一定限度 以上の 投資에 對하여도 兼業規制와 同一하게 届出制 等の 規制가 必要함을 主張하고 있으나 電氣事業體의 經營基盤 強化의 實情을 考慮하고 또 나아가서는 規制의 簡素化 및 合理化의 趣旨를 參酌하여 投資規制의 法文化는 採擇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特히 注目되는 것은 電氣事業體의 資産再評價 命令規定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財産價値의 現實的 把握은 財務會計面에서 公益事業 經營 全般에 亙하는 重大한 問題點, 特히 適正料金問題, 資金調達問題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이므로 政府는 이에 對한 適切한 措置를 豫見하고 資産再評價에 對한 命令權을 保有케 한 것이다. 이 點으로 볼 때 電氣事業은 비록 日本에 있어 私企業體의 形態를 取하고 있으나 그 公益性으로 因하여 需用家인 國民과 事業者 間에서 合理的인 方法에 依한 政府의 適切한 指導, 育成, 調整 等の 面이 舊法보다 더욱 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第4節 電氣工作物은 主로 電氣事業用의 電氣

工作物에 關한 諸 規定을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第1款 工事計劃 및 檢査, 第2款 保安으로 되어 있다.

第1款 工事計劃 및 檢査는 工事計劃의 認可 및 事前届出, 使用前 檢査, 定期 檢査 等の 諸 規定을 主 內容으로 하고 있으나 規制의 簡素化, 合理化의 見地에서 舊法上의 認可를 要하는 工事計劃의 一部를 事前届出制로 바꾼 點을 除外하고는 全體의 體系는 舊法과 거의 같다.

그러나 工事計劃을 要認可 事項과 事前届出로 足한 事項으로 具體的으로 區分함에 있어서는 保安上 支障이 없는 限 될 수 있는대로 簡素化, 合理化하기 爲하여 届出制로 할 것을 豫定한 것인데 이는 通商産業省令으로 規定되어 있다. 또 舊法에 있어서는 施設保安 關係의 規制가 舊法에 依據한 省令으로 行하여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當時의 立法上으로는 오히려 當然之事였으나 民主法制 精神에 따라 新法은 認可基準, 合格基準 등은 法律로서 明定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法制面에서 民主化되었음도 또 法運用에 있어서도 民主化를 다짐하게 되었다. 國民의 財産權과 關係되는 事項을 全面的으로 命令으로 規制토록 委任함을 止揚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工事計劃의 認可 等に 있어서는 保安上의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電氣의 圓滑한 供給 確保, 公害防止 等の 觀點에서 審査토록 되었다.

特히 本節에서 注目되는 것은 工事의 申告制度에 關한 것이다. 우리 電氣事業法施行令에 있어서도 第21條에 依한 既許可된 施設物의 代替와 第22條에 依한 復舊工事に 對하여는 申告制로 하고 있으나 이는 緊急성과 既許可된 事項인 것을 前提로 하고 있는 어데까지나 消極的인 것에 不適當한 것이다. 保安을 中心으로 하여 公安에 無關한 事項은 申告制로 함으로써 行政의 簡素化와 經營의 自律性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現代에 있어 電氣事業者는 이미 自意에 依한 어떤 經營이나 施設을 할 수 없 으리만큼 相互 聯關된 規制下에 있으므로 重複되는 規制는 오히려 不必要한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煩雜을 招來할 뿐이며 技術面에 있어서도 電氣事業者의 水準은 過去에 比할 수 없을만큼 높아져 있는 까닭이다.

또 事前檢査制度에 關하여 보면 技術의 基準(日本 新法 第48條의 所定 基準)에 適合할 때에는 合格된다는 宣言規定을 두고 있다. 技術的 事項은 客觀的 事項이므로, 合格 與否의 判定을 客觀的으로 保

障하기 爲하여는 法定 基準을 定해 놓는 것이 實際上 實效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點은 法律制度의 民主化라는 點에서 크게 關心事가 되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第2款 保安은 電氣工作物의 維持基準, 同 基準 適合命令, 同 基準 適合에 要하는 費用의 負擔 等 保安規定과 主任技術者 等に 關한 諸 規定을 主 內容으로 하고 있으나 注目하여야 할 點은 電氣工作物의 維持基準의 重點을 法律上 明示한 點, 主任技術者制度의 充實과 保安規程 作成 等に 依한 自律保安體制의 確立을 期하고 있는 點 等을 들 수 있다. 電氣工作物의 維持基準은 工事計劃 認可基準 및 檢査의 合格基準의 一部로서도 使用되고 있으며 電氣工作物에 關한 技術基準의 核心이 되어 있는 點이지만 그 內容으로서는 所謂 保安 以外의 公害防止, 他 物件에 對한 電氣的, 磁氣的 障害의 防止, 電氣工作物의 損壞에 依한 供給支障의 防止 等に 關한 事項이 規定되어 있다. 主任技術者制度에 있어서는 舊法에서는 電氣事業者는 汽機·汽罐主任者, 堰堤主任者를, 自家用 電氣工作物施設者는 電氣事業主任技術者, 汽機·汽罐主任者 및 堰堤主任者를, 各各 選任하도록 되어 있으나 新法에서는 電氣事業者, 自家用 電氣工作物施設者도 電氣主任技術者, 汽機·汽罐主任技術者, 堰堤·水路主任技術者의 選任義務를 賦課하도록 되어 있으며(自家用 電氣工作物施設者에 對하여는 後述) 新設된 保安規程의 適切한 運用과 더불어 技術의 進歩 等に 隨伴하여 簡素화된 保安規制面을 自律保安體制에 依하여 카버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保安規程에는 社內 保安組織, 主任技術者의 職務, 電氣工作物의 保守, 緊急時 對策 等이 規定되어 있어 電氣事業者 및 그 從業員은 保安規程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또한 他 物件의 設置에 依하여 電氣工作物의 間隙, 距離 等이 維持基準에 適合하지 않게 된 경우 當該 物件의 設置者와 電氣事業者 間의 費用負擔 等の 調整規定은 日本의 舊法에서도 가스設備와의 關係에서는 規定이 있었으나 新法은 이 點을 보다 一般의 規定하였다.

(5) 第5節 土地 等の 使用에 있어서는 電線路工事 等を 爲한 土地 等の 一時使用權, 測量이나 實地調查를 爲한 土地의 出入權, 電線路保守를 爲한 土地通行權, 植物의 伐採·移植權, 公共用 土地의 使用權 等 土地에 關한 公益事業의 特權을 規定하고 있으나 舊法에서도 一時使用權을 除外하고는 大

體로 같은 規定이 있었던 것이다. 電氣事業審議會의 意見은 電源開發用地 確保를 圓滑하게 하기 爲하여 強力한 特權을 電氣事業者에 賦與하고 或은 不當한 補償要求를 抑制하기 爲하여 必要한 立法措置가 講究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依據하여 新法의 立法 過程에 있어서는 이 點이 強力히 論議되었으나 今後의 課題로서 남겨지고 말았다. 本節은 우리 電氣事業法의 內容과 大體로 同一하다. 다만 우리 電氣事業法 規定이 極히 抽象的인데 比하여 要件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여 公益事業으로서 不可避할 경우에 限定하도록 하여 個人의 財產保護와 의 調和에 慎重을 期하고 있는 點이 特色이다.

### 〔第3章 電氣事業用 以外의 電氣工作物〕

本章은 第1節 一般用 電氣工作物 및 自家用 電氣工作物, 第2節 指定 調査機關으로 成立되었으며 主로 保安面을 規制하고 있다.

(1) 第1節 一般用 電氣工作物 및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定義, 一般電氣事業者 等の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調査의 義務 및 그 調査業務의 指定 檢査機關에의 委託,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維持基準 適合命令,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工事 等に 關한 諸 規制로 成立되어 있다. 舊法에서는 電氣工作物은 電氣事業用과 自家用으로 區分되었고 新法에서 規定한 「一般用 電氣工作物」에 對하여는 電氣事業者側에 保安責任이 있고 그 結果 各社의 供給規程에도 그 趣旨가 記載되어 있었다. 이들 規定은 本來 屋內 配線施設이 電氣事業者의 財產으로 歸屬되었던 當時의 思考方式에 立脚한 것이었으나 現在에 있어서는 屋內 配線施設의 大部分이 一般 需用家의 所有로 移管되고 出入權 없는 電氣事業者에게 保安責任을 賦課하고 있는 것은 不適當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서 一般 電氣工作物을 明確히 함과 同時에 保安責任을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所有者나 占有者에 賦課하여 責任關係를 明確히 하는 反面(一般 需用家에 責任이 있다는 趣旨의 明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通商産業大臣의 一般用 電氣工作物 改善命令이 直接으로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對하여 行하여지는 點으로 보아 自明한 解釋임 <第68條>) 電氣知識이 充分하지 못한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所有者나 占有者가 스스로 檢査 等を 行한다는 것은 大端히 困難하며 또한 電氣라는 危險物을 供給하는 者가 이를 使用하는 施設의 安全度를 確認하는 것



은 電氣供給에 隨伴되는 社會的 責任이라고 생각되므로 一般電氣事業者等 一般用 電氣工作物에 對한 電氣供給者에 對하여 一般用 電氣工作物이 維持基準에 適合한가의 與否를 調査케 하고 本基準에 不適合할 경우에 必要한 措置 및 그 措置를 取하지 않는 경우에 發生되는 結果를 그 所有者나 占有者에 通知하여야 하는 義務를 賦課하고 있다. 또한 이 調査나 通知를 不履行하거나 또는 그 實行方法이 不適切한 경우에는 通商産業大臣이 必要한 命命을 發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本 調査나 通知 義務는 通商産業大臣이 指定하는 專門的 機關(後述 指定 調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으며 委託할 경우 委託者는 이 業務를 實行할 義務가 免除된다.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對한 規制 內容은 工事計劃의 認可, 届出, 主任技術者等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에 關한 것과 大體로 같은 것이다. 小規模 自家用 電氣工作物 施設者에 있어서는 主任技術者의 選任等에 關한 保安上 支障이 없는 限度 內에서 過重한 負擔으로 되지 않도록 配慮되어 있다.

이와 같이 日本 電氣事業法은 電氣工作物을 ①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 ②一般用 電氣工作物 ③自家用 電氣工作物로 區分하고 있다. 이 中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關하여는 우리 法制과 大體로 같으나 一般用 電氣工作物에 關한 것은 우리 法制에는 없는 制度이다. 即「他人으로부터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하는 電壓 以下の 電壓으로 受電하여 그 受電場所와 同一 構內에서 그 受電 電氣를 使用하기 爲한 電氣工作物로서 그 受電電線路 以外的 電線路에 依하여 當該 構內 以外的 場所에 있는 電氣工作物에 接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發電所 構內 消費를 爲한 電氣工作物, 爆發性·引火性 物質이 存在하는 場所로서 省令으로 定하는 電氣工作物, 興行場 等の 電氣工作物로서 省令으로 定하는 것 등을 除外한다(우리 나라 自家用 電氣工作物 第1種에 該當되는 것임). 이러한 電氣工作物의 保安을 電氣事業者와 電氣工作物 所有者와의 社會的인 連帶意識에 依하여 調和하도록 한 點이다.

(2) 第2節 指定 調査機關은 指定 調査機關의 指定 調査義務, 業務規程, 監査命令 等の 規定으로 成立되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一般電氣工作物의 調査는 一般電氣事業者等 電氣供給者側이 行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으나 現在의 9個 電力會社等에서는 巨大한 需用家를 保有하고 있고 實際問題上

이 業務를 完全히 遂行하려하는 아직도 많은 難關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一般電氣事業者 등이 末端業務인 調査業務 등을 行하기 보다는 專門的 機關이 本業으로서 能率的으로 이를 行함인 保安確保上 適切한 實益點이 있는 까닭에 受託業務의 遂行業務, 業務規定의 認可等 嚴格한 諸 規制下에 公益法人으로서 指定 調査機關을 制度化한 것이다. 또한 指定 調査機關의 調査·通知業務에 所要되는 費用은 委託者로부터 委託料로서 支拂되며 一般需用家로부터 直接 徵收되는 것은 아니다. 이 指定 調査機關制度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많은 實益이 있는 制度라고 생각된다. 大部分의 電氣事故는 豫防措置의 未洽이 原因이 되며 이 結果가 너무도 社會 公安과 直結되어 있는 點을 勘案하면 이런 專門機關으로하여금 이에 從事토록 하여 事故未然防止에 萬全을 期함은 適切하고 必要한 措置이다. 法改正에서 制度로서 導入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第4章 電氣事業審議會 및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

本章은 電氣事業審議會 및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의 組織, 權限 등을 定한 것이다. 電氣事業審議會 및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는 原案에 있어서는 通商産業省 設置法에 依據한 것이며 이 組織, 權限 등에 있어서는 政省令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으나 電氣事業의 公益性, 重要性 등을 勘案 電氣事業審議會에 關한 規定은 本法에 規定하는 것이 適當하며 또한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의 權限 一部에 있어서는 原案 中에서도 規定한 바 있는(第56條 第2項) 것이고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에 關한 規定도 또한 本法 中에 規定하는 것이 法律關係가 明確하여진다고 判定되어 日本 國會에서 修正되었다.

電氣事業審議會는 電氣事業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査 審談하도록 되어 있으나 于先 新法 施行을 爲하여는 重要 政省令案을 審議하는 것이 最大 任務였었다고 생각된다.

電氣主任技術者資格審議會는 法定前의 電氣事業主任技術者資格檢定審議會와 大體로 같은 性格의 것이며 이 點에 對하여 우리 나라 電氣主任技術者資格檢定令에 依한 電氣主任技術者資格檢定委員會의 內容과 大體로 同一하다.

## 〔第5章 雜 則〕

本章은 許可 等의 條件, 發電水力, 電氣工作物 檢査官, 監査, 報告接收, 公聽會, 聽聞, 隘路事項 陳情, 手數料 等 重要한 事項이 規定되어 있다.

過去의 水主火從으로부터 火主水從으로 轉換한 現在의 日本은 今後에 있어서도 이 傾向은 더욱더 持續되어 갈 것이 豫想되는 오늘날 發電水力에 對하여 舊法과 같이 特別 一章을 設定한 必要가 없다고 생각되어 雜則에 規定된 것 같다. 이번 새로이 新法에 規定된 것은 電氣工作物 檢査官, 監査, 隘路事項 陳情, 公聽會 等에 關한 規定이다.

電氣工作物 檢査官 制度와 監査는 前述한 바와 같이 施設保安面, 財務會計面에 있어서의 規制의 簡素化·合理化 方針에 對應하는 것이며 隘路事項 陳情이 消費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한 制度인 것도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또한 新法은 行政의 民主化 等의 見地에서 一般電氣事業者의 許可, 供給區域 擴張의 許可, 供給規定의 許可와 같이 一般需用家 全體에 影響을 미치는 것 같은 行政處分에 對하여는 公聽會를 開催하여 널리 一般의 意見을 들도록 되어 있다. 公聽會 制度를 法制化한 點도 法運營의 民主化를 爲한 劃期的 措置이며 法制上 參考로 할만한 點이다.

## 4. 結 言

以上이 新 日本電氣事業法의 概要이다. 에너지의 革命時期라고도 할 수 있으리만치 人類의 文化는 바야흐로 새로운 에너지源을 찾아 이를 生活에 利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管理를 爲한 法制도 漸次 그 法理念을 달리하고 있다. 에너지事業에 對한 規制法의 하나로서 電氣事業法도 그 例外일 수는 없는 것이다. 電氣를 安全하게, 豊富하게, 有

用하게 하기 爲한 것이 電氣事業法의 重點이다. 이 點은 時代에 따라 場所에 따라 다를 것이 없으나 그 手段은 技術과 社會의 與件에 따라 달라지고 發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日本에 있어서 新 電氣事業法이 制定되게 된 動機인 것이다.

우리 電氣事業法을 運營함에 있어 日本 電氣事業法의 法理念 또는 法內容은 많은 參考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의 電氣事業法을 理解함에 있어서는 基本法은 極히 原則의이고 抽象的인 것이므로 具體的으로 그 施行을 爲하여 새로 制定된 諸 政令(우리 나라의 大統領令에 該當함)과 通商産業省令(우리 나라의 商工部令에 該當함)에 對하여 檢討하여야 될 줄로 안다. 이 政令과 省令으로는 電氣事業法 施行令(1965年 政令 第206號), 電氣事業法 附則 第11項의 規定에 依한 登記手續에 關한 政令(1965年 政令 第234號), 電氣事業法 施行規則(1965年 通商産業省令 第51號), 電氣事業法의 規定에 依據한 主任技術者의 資格에 關한 省令(1965年 通商産業省令 第52號), 受電制限規則(1965年 通商産業省令 第53號), 電氣關係 諸報告規則(1965年 通商産業省令 第54號), 發電水力 流量測定規則(1965年 通商産業省令 第55號), 渴水準備充當金에 關한 省令(1965年 通商産業省令 第56號), 電氣事業會計規則(1965年 通商産業省令 第57號) 등이 있다.

電氣事業法은 이들 諸 政省令을 通하여 具體化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內容을 檢討하지 않고서는 日本 電氣事業의 具體的인 制度 檢討는 不可能한 것이나 이에 關하여는 다음 機會에 紹介하고자 한다.

같은 紙面關係上 新 日本電氣事業法 本文을 譯載하지 못함에 對하여 讀者의 諒解를 求하여 둔다.

原

第4號의 原稿를 募集합니다.

- 業體 또는 團體 消息
- 研究事項
- 評論·提言
- 隨筆·隨想

稿

枚數：制限 없음(但·橫書)

마감：1966年 3月 31日

送付處：大韓電氣協會 事務局

備考：掲載分 稿料贈呈

募

集